

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4. 25(월)

제 출 자 : 이범연 의원

1. 제안이유

- 일부 법률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고,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

-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규제완화(안 제23조)
 - 마을 안길,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
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, 제조업소 및 수리점(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)
 4. 농업·어업·임업용 시설(가공, 유통,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,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·농어업경영체, 「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업인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, 유통,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)

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아니한 지역에 대하여”를 “않은 지역에 대해서”로, “아니하는 범위안”을 “않는 범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하거나,”를 “하거나”로, “설치하는”을 “설치할”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하여야 하며”를 “해야 하며,”로, “설치하는”을 “설치할”로, “지정·공고하여야”를 “지정·공고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하는 경우”를 “할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또는 농림지역안”을 “또는 농림지역”으로, “자가 당해”를 “사람이 해당”으로, “형질을 변경하고자”를 “형질변경을 하고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마을 안길,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,

제조업소 및 수리점(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)

4. 농업·어업·임업용 시설(가공, 유통,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,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·농어업경영체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업인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, 유통,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(2)에 따라 도로·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<u>아니한</u>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<u>아니하는</u>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로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</p> <p>1.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·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(상수도에 같음하여 「먹는물관리법」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<u>하거나</u>, 하수도에 같음하여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<u>설치하는</u> 경우를 포함한다). 이 경우 도로는 「건축법」 제44조에</p>	<p>제23조(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은</u> 지역에 대해서----- ----- <u>않</u> 는 범위----- ----- . 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하거나</u> ----- ----- <u>설치할</u>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<u>해야 하며,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·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2. 창고 등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</p> <p>3. 생산녹지지역·자연녹지지역·생산관리지역·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·임업·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</p> <p><신 설></p>	<p>----- ----- 설치할 ----- ----- ----- 지정·공고해야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----- 할 경우 ----- ----- ----- 할 경우 -----</p> <p>3. ----- ----- 또 ----- 는 농림지역 ----- ----- 사람이 해당 ----- ----- ----- 형질변경을 하 ----- 고자 -----</p> <p>② 마을 안길,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축물은 도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, 제조업소 및 수리점(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) 4. <u>농업·어업·임업용 시설(가공, 유통,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,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·농어업경영체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업인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, 유통,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)</u>